#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012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7.

발 의 자:이종배·김소희·권영진

이양수 · 이성권 · 이종욱

김성원 • 박덕흠 • 성일종

김미애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도시 개발이란 도시가 산업·연구·관광·레저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·교육·의료·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 기능을 갖추도록 민간기업이 계획적·주도적으로 해당 도시를 개발해 나가는 것을 말함.

이러한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도시 내 기업뿐만 아니라 대학,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기구와 유치대상에 대한 시설 건축비용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가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부재한 실정임.

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, 대학에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기관의 입주를 유도하여 원활한 기업도시 개발을 도모하려는 것

임(안 제40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0조의2(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·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(이하 이 조에서 "기업등"이라 한다)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(이하 "지원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-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- 1. 기업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
- 2.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
- 3.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
-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 병원 및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수 있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<u>&lt;신 설&gt;</u>	
	제40조의2(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 설치・운영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내 입주하는 기업, 대학, 연구소 등 (이하 이 조에서 "기업등"이라한다)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종합지원센터(이하"지원센터"라한다)를 설치・운영할수있다.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사업을 수행한다. 1. 기업도시 내 기업등 입주기관의 유치 및 지원 2. 기업도시 내 입주기관 간 협력 증진 3.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를 위한 대외협력 및 홍보 4. 그 밖에 기업도시 내 기업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설

<신 설>

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.

제45조의2(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도시 내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, 국제기구, 종합병원 및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